

### 가정통신문

제 2024 - 36호 2024. 4. 9.

지성인(Creative), 감성인(Harmony), 실천인(Activity), 자주인(Responsible), 도덕인(Manner)

561-835 전주시 덕진구 공북2길 20번지 / 교무실 252-2364 / 행정실 252-2191

일 252-2191 / FAX 275-7715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학부모 학생생활 지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요즘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일명 지쿠터)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2021.01.12.) 제2조19의2에 따라 2021.05.13.이후부터 <u>원동기</u>면허</u>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우리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 장치를 무면허 운전 시 과태료·범칙금 부과, 보호자 처벌,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뒷면 참조)

또한 보도 주행 중 인명사고가 생길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u>보험&합의 등 여부 관계없이 형</u> 사 처벌 대상이며,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인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 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에 해당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준법의식의 함양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대한 위법행위 발생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가정 내에서 안내와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와 카드정보 등록 필수입니다. 미성년자, 비면허자는 사용 불가합니다. 동반2인 탑승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바이크 이용하는 미성년자나 동반2인 탑승을 카카오톡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안전을 위해! 미성년자와 동반 2인 탑승은 삼가해주세요.

지쿠터 이용시 운전면허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한 헬멧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불가합니다







2024. 4. 9.

전 주 중 앙 중 학 교 장(직인생략)



## 개정 도로교통법,

#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제2조 19의 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지료처럼 모르고통

구분 / 처벌 규정		현행 도로교통법 제 1737년	개정 도로교통법 "21.01.12 공포
시행일		'20.12.10	'21.05.13
법적 지위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b>개인형 이동장치</b>	
통행 방법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 없을 시 드로 구축 가장시기 통행)	
운전면허		×	원통기면허 이상 라 PM 면하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	20만원↓ 범칙금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20만원↓ 범칙금
	<b>안전모 착용</b> (자전거용 언전모)	×	20만원↓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	20만원↓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	20만원 ↓ 범칙금
주요 처벌 조함	음주 운전 (단순 음주)	범칙금 3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도 주행 /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상위 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인명피해 사고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기법)